개선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수출입은행

2. 조치일 : 2017. 10. 10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고객확인 업무 미흡

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에 세부적인 고객확인 의무 관련 지침이 없으므로 고객의 필수 신원확인 사항, 고객위험평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, 국가, 고객유형, 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을 반영한 체계적인 위험평가모형을 구축·운영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

② 고객확인시 필수 신원확인 사항확인 · 검증 내용이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도록 관련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필수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대출 승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고, 고객에게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징구하여 은행이 파악한 실제 소유자와 비교하고 실제 소유자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

(2)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미흡

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 거래로서 추출될 수 있도록 관련 추출기준을 마련하고,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의거하여 추출된 금융거래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며, 보고 제외사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

(3)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체계 미흡

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, 직원알기제도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필요

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체계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

③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규정인 「자금세탁방지업무취급세칙」을 특정금융정보법규에 맞게 정비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의 「FIU보고정보 보안 기준」(2016.1.1. 시행)을 반영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보안관리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